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1037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김택빈

피 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신익상, 정준우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피고들과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G에게, 피고 B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0. 접수 제155951호, 피고 C은 같은 법원 2020. 7. 10. 접수 제155952호, 피고 D은 같은 법원 2020. 7. 10. 접수 제155953호, 피고 E은 같은 법원

2020. 7. 10. 접수 제155954호, 피고 F은 같은 법원 2020. 7. 10. 접수 제15595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H, I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G이 위 도급계약에 관한 H, I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G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2184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15. ‘G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600,000원 및 그 중 314,2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G 등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6605호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2021. 10. 18. ‘G 등은 연대하여 2016. 5. 26.자 토목공사계약 및 2017. 1. 15.자 대금지급확인서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21. 12. 31.까지 150,000,000원, 2022. 3. 31.까지 200,000,000원, 2022. 6. 30.까지 20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G은 2020. 7. 10.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0. 접수 제155951호로, 피고 C에게 같은 법원 2020. 7. 10. 접수 제155952호로, 피고 D에게 같은 법원 2020. 7. 10. 접수 제155953호로, 피고 E에게 같은 법원 2020. 7. 10. 접수 제155954호로, 피고 F에게 같은 법원 2020. 7. 10. 접수 제15595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21. 10. 18. 성립한 조정의 결과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광주시 J 도로 149㎡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10,000,000원, 위 J 토지의 가격은 40,215,100원인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3. 12.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4. 15. 같은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8. 30. 같은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G은 원고에 대하여 550,0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및 피고 B에 대하여 9,9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31,000,000원, 피고 D에 대하여 15,000,000원, 피고 E에 대하여 70,000,000원, 피고 F에 대하여 150,000,000원 합계 551,9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G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기 및 G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G은 위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2017.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314,200,000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비추어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원고는 앞서 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정당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20. 6. 30., 피고 C은 2020. 7. 10., 피고 D은 2020. 4. 10., 피고 E은 2020. 7. 8., 피고 F은 2020. 7. 10. G와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2020. 7. 10. 동일한 날짜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G와 실제 금전거래를 한 시점은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점, 원고가 2017.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314,2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쳐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하여 원고의 채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과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G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별지